

도선운항약관

2022. 07. .

세종해운(주) 대표이사 이 경 제
(운항구간 : 삼목-장봉)



도선사업 운항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항 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도선사업에 있어서 운송인과 여객 간의 여객운송 및 차량, 건설장비, 기계 기타 소화물 등 운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범위)

- ① 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 운송과 차량 및 건설장비, 기계 기타 소화물 등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 ③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④ 여객 및 차량 건설장비, 기계 기타 소화물 등 운송 당일에 유효한 운항 약관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 ⑤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적용 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권을 개표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4. “정액운임”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수리된 비할인 여객운임을 말한다.

5.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장애 승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및 유모차
 - 2) 공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시각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장애인 보조견
6. “특수장비”라 함은 선체의 구조나 선착장 및 조석간만의 여건상 여객선 또는 도선에 탑재 하는데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 위험이 따르는 차량 또는 장비를 말한다. 이를 여객선 또는 도선에 탑재 할 때는 운송 신청인(운전자등)의 책임 하에 탑재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형45인승버스, 지상고가 낮은 저상추레라, 건설장비차량, 고가의 송차량, 특수소방차량, 콤포렛샤 등)
7.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오토바이,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세발자전거 포함)
 - 2)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의 수송 중의 사료는 여객이 준비하여 이의 운송에 따른 비용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 3)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8. “수하물표”라 함은 위탁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9. “특수수하물표”라 함은 특수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0. “운송 신청인”이라 함은 여객 중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11.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만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2. “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3. “소아”라 함은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4. “유아”라 함은 만12개월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5.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

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한다.

16.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17. “도서민”이라 함은 승선하고자 하는 도선이 취항하고 있는 당해 도서에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8. “신용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과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 카드를 말한다.
19.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화물이 승선자,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

여객은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입 또는 수하물표 및 특수 수하물표를 교부 받음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약관의 성립)

운송인의 영업소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에는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의 운임표, 운항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항상의 변경)

- ① 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 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 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이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운송상의 제한)

- ① 운송인은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 2.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송상의 제한 내용을 도선 터미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 운송

제1절 승선권 발권 및 예약

제8조(여객 및 차량표 발권 및 예약)

- ① 운송인은 도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신분증 및(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제시한 여객에 한해 승선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③ 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시각 1일 전까지 회원 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승선권(차량승선권 제외)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승선권의 기재 사항)

-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
- 1. 운송인의 명칭
 - 2. 승선구간

3. 운임액
4. 승선일
5. 발행일

제10조(승선권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4. 신분, 연령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제11조(승선권의 유효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당일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여객이 승선 후 승선권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선한 동안에 한하여 당해 승선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3. 여객이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승선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시점까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승선권의 분실)

- ①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 하였을 경우 승선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대한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여객이 후일 당해 분실 승선권을 발견하여 유효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인에게 제시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최초로 지불한 운임 전액 또는 새로운 승선권 구입에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제2절 운임 및 요금

제13조(운임 및 요금의 적용)

- ① 여객운임은 운송인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수리된 여객 화물 기타 운임을 말한다.
- ② 기타 터미널 이용료, 사설 부두 이용료 및 종선료는 여객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적용 운임 및 요금)

- ①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 ②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예약 당시의 운임과 제1항의 적용 운임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5조(소아 운임)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수리된 할인 소아 운임을 말한다.

제16조(무임 운송)

- ① 승선권을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여객 1인당 유아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 ② 승선권 구입 여객 1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운임을 징수한다.

제17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

- 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성인 정액운임의 일정을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1. 유아(만12개월 미만) : 무임
 2. 소아(만1세이상 만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 : 50%

3. 중·고등학생 개인 : 10%
 4. 노인(만65세 이상) : 20%
 5. 1-3급 장애인(1-3급 상이유공자 포함) : 50% 이내(1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6. 4-6급 장애인: 20%
 7. 1-5급 국가유공자(1급 유공자의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 10%
 8. 6-7급 국가유공자 : 20%
 9. 중·고등학생 단체(20인 이상) : 20%
 10. 일반인 단체(20인 이상) : 10%
 11. 군인 : 10%
 12. 기타 운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해양경찰서장에 게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 ② 여객은 제1항 각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 승선권에 대해 중복 할인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 ③ 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관련 신분증명서를 승선권 발매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임 및 요금의 할증)

- 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 교통제계효율화법」에 따른 하계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 ② 제1항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컨테이너, 하우스 건설장비, 기계류 등은 선박갑판을 차지하는 범위, 무게에 따라 당사에 규정한 할증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 ①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

구분		공제 및 환불 내역	
		출항전	출항후
1. 여객이 승선권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단체	전액 환불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개인	전액 환불	
2. 일기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o. 전액 환불	
	출항후	o.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o. 전액 환불	
	출항후	o.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환불 없음 o. 출발항까지 환송시: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o. 중도에서 하선시: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 환불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 시간이 지연될 경우		o. 당해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100% 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50%환불 ★ 운항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당해 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 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4절 여객의 의무

제20조(여객의 의무)

- ①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

해 선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조정, 운항 설비 및 승하선용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2. 선박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선박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 소화기, 경보장치, 구명동의, 기타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를 조정, 이동 하는 행위
5. 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6. 승선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7. 승선자, 승선 적재물, 선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8. 바다에 투기가 금지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9. 다른 승선자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는 행위
10. 선내의 질서 및 미풍약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제22조(운송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술에 만취한 자 또는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때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6. 여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8. 기타 제22조의 여객 금지행위에 대해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제23조(부가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정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승선 구간에 대하여 당해 승선구간의 정액운임과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부가 징수한다. 다만, 승선향이 불명일 경우 시발항부터 승선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부정 발급된 승선권, 위조 승선권, 타인 명의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는 경우
2. 여객운임 할인 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승선하는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는 경우

제3장 화물의 인도 인수 보관 및 취급사항

제24조(수화물 및 특수수화물표 발행)

- ①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운송신청인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운송하여야 하며 특정한 운송신청인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 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특수수하물을 운송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

제한 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운송신청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2. 수하물의 품명, 개수, 용적, 중량
3. 운임 및 요금
4. 운송 구간
5. 운송 접수 년 월 일

제25조(내용 신고)

운송 신청인은 탁송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 한다.

제26조(내용 점검)

- ①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27조(휴대품의 보관 책임)

- ①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운송인은 안전운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 ③ 인도견과 같이 승선하는 시각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의 인도견은 시각장애인의 발 근처에 두고 인근 여객의 양해가 없으면 인도견에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인도견의 먹이나 배설물 등의 취급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운임 및 요금)

- ①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 표에 의한다.
- ②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하는 휴대품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시각 장애인의 인도견이 별도의 좌석을 점용할 때에는 해당구간 성인 정액운임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

- 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운송신청인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무임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2.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이동이 금지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품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기타 운항 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30조(운송신청인의 사정 변경)

- ① 운송인은 수탁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신청인의 탁송 취소 및 여행 중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도중 양륙, 내용품의 인출, 기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 ② 운송신청인의 탁송 취소, 여행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송신청인이 부담한다.
- ③ 운송 신청인이 수탁 수하물에 대하여 탁송 취소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송 취소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발송전의 경우 : 탁송 화물 운임의 10%
 2. 발송후의 경우 : 왕복 화물 운임

제31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도)

- ① 운송인은 수탁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수탁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를 상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 ② 운송신청인이 수하물표 또는 특수 수하물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 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32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처분)

- 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 투기, 공탁, 매각,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의 다른 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운송인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양륙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4. 냉동, 살균, 포장되지 않은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에게 그 처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재지 또는 양륙지의 영업소 및 대리점 등에 게시한다.
- ③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 중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운송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4장 배상 책임

제33조(여객 및 화물 배상 책임)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 사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차량 및 화물 배상에 대해서는 화물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운송인과 합의하에 배상한다

제34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 ① 운송인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운송인의 위탁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제35조(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6. 운송신청인의 수하물, 특수수하물에 대한 허위신고, 또는 운송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일십만원(₩100,000.-)이상의 고가품
7. 수하물, 특수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8. 여객, 운송신청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36조(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 책임)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 및 운송신청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칙

이 운송약관은 2022. 07월 일부터 시행한다.